

지구촌교회 자산이전등기

법무사 선정 입찰지침서

2024. 4. 4.

기독교한국침례회 지구촌교회

TEL.031-270-8103
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48번길 48

I. 일반사항

1. 목적

본 입찰지침서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지구촌교회(이하 "발주자"라 한다)로의 자산 이전 등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무사 선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사업계획의 개요

가. 사업명 : 지구촌교회 자산이전등기

나. 발주기관 : 지구촌교회

다. 사업지 위치 : 별첨 참조

라. 연면적 : 별첨 참조

마. 부동산 과세 표준액 : 별첨 참조

※ 상기 사업계획의 개요는 등기 이전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.

3. 입찰 일정

가. 투찰개시 : 2024년 04월 04일(목요일)14:00 누리장터

나. 현장 설명회 :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같음

다. 투찰마감 : 2024년 04월 11일(목요일)10:00 누리장터

라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4년 04월 11일(목요일)11:00 지구촌교회 입찰담당자 PC

마. 낙찰자 선정 : 적격심사 후 개별통지

II. 입찰참여 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공익법인으로부터 지구촌교회(이하 "발주자"라 한다)로의 자산 이전 등기를 추진함에 법무사 선정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리)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법률용어의 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① "발주자"라 함은 지구촌교회를 말한다.

② "입찰자"라 함은 입찰공고 및 본 입찰참여규정 등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,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- ③ "우선협상대상자"라 함은 선정된 "입찰자"를 말한다.
- ④ "낙찰자"라 함은 "우선협상대상자"를 거쳐 최종 선정된 "입찰자"를 말한다.
- ⑤ "누리장터"라 함은 "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"에 의한 "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"으로 조달청장이 구축·운영·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- ⑥ "입찰서"라 함은 "누리장터"에 제출한 "입찰자"의 입찰금액 제안서를 말한다.
- ⑦ "입찰서류"라 함은 제6조(입찰참가 제출서류)를 말한다.
- ⑧ "입찰서 등"이라 함은 "입찰서" 및 "입찰서류"를 말한다.

제3조(용역의 범위)

- ① 소유권이전등기 등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

제4조(용역기간)

- ① 선정일(또는 계약체결일)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로 한다.

제5조(입찰방법 및 참가자격)

- ① 입찰 방법 : 지역제한 경쟁입찰(서울,경기,인천)/ 적격심사제/ 전자입찰(누리장터)
- ② 공동참여 불가
- ③ 참가자격
 - 1. 법무사 면허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
 - 2. 전문성과 용역수행 실적 등을 갖춘 업체
 - 3. 입찰서 등을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한 업체

제6조(입찰참가 제출서류)

- 1. 입찰금액 제안서
- 2. 입찰 참가신청서
- 3. 입찰업체 기본현황표
- 4. 청렴계약이행 서약서
- 5. 최근 5년 이내 자산이전등기 법무사 업무 수행실적 (자유양식)
- 6.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
- 7. 보유 법무사 전원 자격증 및 보유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8.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시에만 제출)
- 9.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※ 위 입찰양식 1~4는 누리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에서 받아 사용
 - ※ 모든 입찰서류는 스캔하여 누리장터에 업로드 해야 하며, 입찰 서류가 누락된 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됨

제7조(관계사항 등의 속지)

- ① "입찰자"는 입찰공고사항 및 이 지침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"입찰자"에게 있다.

제8조(입찰의 무효)

다음 각항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입찰은 무효(유찰)로 한다.

- ① "입찰자"가 1인 이하일 경우
- ②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(제5조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, 제10조 입찰의 성립 참조)
- ③ "누리장터"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
- ④ "입찰자"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(입찰참여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입찰자가 입찰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상이할 경우에도 포함한다.)
- ⑤ 일부 첨부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

제9조(입찰의 연기 및 취소)

- ① "발주자"는 설명 및 요구사항의 변경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 마감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.
- ② 계약체결 전, 후라도 "발주자"의 사업추진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"입찰자"는 입찰의 연기 및 취소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0조(입찰의 성립)

- ① "입찰참여 희망자"가 이 규정 제6조에 의한 "입찰서류"와 "입찰서"를 누리장터에 접수하여 응찰한 경우에만 입찰이 성립된다.
- ② "발주자"가 접수서류를 검토하여 서류의 미비 또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)

- ① "입찰자"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인감이 상이하게 제출된 서류는 무효 처리한다.
- ② "입찰서류"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"입찰서류"의 금액표시는 원화를 원칙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.
- ④ "입찰자"는 지정된 시간 내에 "입찰서"를 "누리장터"에 접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"낙찰자"의 결정 및 계약 등)

- ① 입찰마감 후 "발주자"가 "입찰자" 별로 입찰서류 종합평가 후 심의를 진행하고, "입찰자"평가는 적격심사(업무 수행실적, 제안 가격의 적정성 등)를 통해 "우선협상대상자"를 선정하고, 시담 후 최종 "낙찰자"를 선정한다.

- ② 만약 "낙찰자"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"발주자"와 계약체결에 불응 또는 선정 후 7일 안에 계약 미체결할 경우에는 "발주자"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"발주자"는 위 2항에 의하여 낙찰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④ 위 2항의 경우에 취소된 "낙찰자"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⑤ 이 지침서의 절차, 기준 및 결과 등에 대하여 "입찰자"는 일체의 민·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3조(비밀유지의 의무)

"입찰자"는 "발주자"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등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"입찰자"가 진다.

제14조(기타사항)

- ①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"발주자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"입찰자"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② 입찰지침서가 보완 및 수정되는 경우에도 입찰지침서의 일부로 보며, "입찰자"에게 통보한다.
- ③ "발주자"는 선정된 "낙찰자"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"발주자"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(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선정된 "낙찰자"는 "발주자"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"낙찰자"는 "발주자"를 보조하여 제반 자산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제안서, 계약서 및 문서 등에 의하여 "발주자"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"낙찰자"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은 "낙찰자"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"낙찰자"의 부담으로 한다.
- ⑥ "낙찰자"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자문하여야 하며, "발주자"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.
- ⑦ 본 지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⑧ 입찰서에 거짓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"발주자"의 결정에 따라 입찰자격을 박탈될 수 있다.
- ⑨ 서류 심사 등에서 탈락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.

제15조(부칙)

본 입찰지침서는 2024년 04월 04일 공고하는 법무사 선정에 한한다.